

『집합금지된 유흥시설의 재산세 중과분 감면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1. 제 출 자 : 구 미 시 장

2. 제안이유

- 코로나19 감염병의 장기화 및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등으로 인한 영업적 피해가 큰 유흥시설은 일반과세 대상보다 높은 세율의 재산세가 적용되어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음.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4항 및 「지방자치법」 제39조에 따라 의회 의결을 얻어 한시적으로 시세를 감면하고자 함.

3. 재산세 감면내용

- 감면대상자
 - 과세기준일(2021. 6. 1.) 현재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제1호다목2) 및 제2호가목 세율이 적용되며, 해당년도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대본·지자체가 시행한 집합금지 · 영업제한 된 사업장이 운영되는 건물 및 토지의 납세의무자
- 감면내용
 - 중과대상 적용시의 중과되는 세액을 감면하기 위하여 일반과세시 세율 및 세액을 적용.

가) 건축물 적용 세율

감면 전 적용세율	감면 후 적용 세율
지방세법 § 111①2가목	지방세법 § 111①2다목

예시) 4%(§ 111①2가목) → 0.25%(§ 111①2다목)

나) 토지 감면액 산출식

제111조 제1항제1호다목2) 적용세액 - 제111조 제1항제1호나목 적용세액

예시) (분리과세 4% - 별도합산 적용시 세액) 감면

	부과세액	일반세율 적용금액2)	중과세율적용 시부과세액1)	감면세액 1) - 2)
재산세(토지)	200,000	200,000	4,000,000	3,800,000

4. 감면방법 : 직권

5. 기타사항

- 본 의결 후 추가로 확인된 대상자에 대해서도 의결된 안을 준용 하되, 이미 납부한 지방세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환급한다.
- 허위로 감면받거나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 위반사항이 확인된 경우에는 감면 세액을 추징한다.

6. 참고사항

- 감면 추계액 : 붙임
-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39조(지방의회의 의결사항)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
-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지방세 감면규모 등)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정의) 제1호 나목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제2호

○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합 의 : 기획예산과와 합의되었음

○ 기 타 : 행정안전부 코로나19 지원 지방세 감면 조례·의회 의결
대상 개정 안내(행정안전부 지방세특례제도과- 1177, 2021. 5. 24)

7. 검토의견

○ 본 동의안은

-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개정으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집합금지된 유흥시설에 대하여 지방세 감면이 가능해짐에 따라 재산세 중과분을 감면하기 위하여 지방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안임.

○ 검토 결과,

- 재산세가 중과되는 유흥시설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영업적 피해가 큰 업종임에도 지방세 감면에 대한 근거 부재로 고율의 재산세가 적용되어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었으나,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개정으로 지방세 감면이 가능해짐에 따라 261개 사업장, 재산세 중과분 7억8천7백만원을 감면하여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피해 지원과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감면조치는 필요하다고 사료됨.